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4호
- 나. 제 출 자 : 정재동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스포츠클럽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스포츠클럽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스포츠클럽 회계관리, 보고·검사,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등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스포츠클럽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법 제3조 근거)

3)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함.(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거)

4) 안 제7조(지원 및 범위)

-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시함.
- 상위 법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감면조항을 규정함.

5) 안 제8조~제11조(지원 신청, 회계관리, 보고 감사 등)

-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환수 규정까지 근거함.

다. 검토의견

- 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적 모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강습활동 또는 강좌 개설, 선수 양성 등을 통해 체육시설, 전문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공급하여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는 공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
따라서 스포츠클럽은 정부 주도의 생활체육 인프라 마련 또는 민간 시장형 체육업체 등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이 제정됨.
-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연계방안 중 하나로서,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전문 종목지도와 대회참가자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의 책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목적 등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현황(2022. 11월 기준)

- 서울시 6개 자치구(강서, 광진, 구로, 노원, 마포, 영등포)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